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5
----------	-----

제출년월일 : 1998.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이 '98.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 별표 수수료를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문서·대장·도면·카드등
·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시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시 50원
- 녹음(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등에 관한 수수료(별첨안 참조)

□ 개정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7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별표2와"를 "별표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3과"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또는 신고서"를 "신고서 또는 청구서"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 제2항중 "별표3"을 "별표4"로 하고,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